

제43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3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	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3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3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3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3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3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3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3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3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3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3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3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3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 간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일부 법안과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10시09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총 28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과 현안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선거관리 주무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 밖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후보자비방죄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24년 헌법재판소가 비방 금지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헌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안 박스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현재 결정 취지를 보시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선관위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현재가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해소를 위해서 선거법 251조 본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관련 251조를 개정할 경우에는 현재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조문이 있습니다. 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항 그리고 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항에서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데 대한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문도 같이 개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가 전체 조항을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서의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후보자는 본 후보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면 예비후보자도 포함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위 말해 입후보 예정자도 포함이 되는 조항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면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만약에 삭제하게 되면 이 조항으로는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51조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승환 위원** 예비후보자는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록 절차를 마쳤는데?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사무차장에게……

○**조승환 위원** 예비후보자는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록 절차까지 마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예비후보자를 포함하셔도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예비후보자는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물론 공천 확정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거의 같은, 실질적인 후보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후보자는 아마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정춘생 위원** 예, 저도 평소에도 이 조항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너무 애매해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비후보자까지는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득 위원** (손을 듭)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 법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예비후보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아까 질문만 드렸는데 저도 현재 취지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지 꼭 정 후보자만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후보자까지는 포함시켜 뒀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만일 위임해 주신다면 법조문을 전문위원님하고 저희가 손을 보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이렇게 할지 그것은 선관위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예비후보자를 넣자라는 취지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해서 법조문을 만드는 것은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저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의 후보자나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동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미반환 선거비용의 징수 위탁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서 소위자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당선무효형 확정 시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과 같이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이 보전·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국고 손실과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데 국세청과 세무서의 주 업무가 조세 징수이고 선거비용 반환은 부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쪽의 표를 보시면 미반환된 건수와 금액을 보시면 총 85건에 222억 정도인데 지방선거 부분이 73건에 20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2쪽으로 돌아오셔서 개정안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반환받은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비용 반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는 선거 보전비용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징수하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세무서보다 더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선거비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징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쪽,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적용례를 뒤서 시행 전의 미반환 선거비용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존 채납처분 절차와의 충돌이나 자료 이관 및 권한 재설정 등에 따른 행정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용례를 삭제하고 그 전 부분은 종전 같이 국세청에서 징수하도록 경과조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금 반환받은 기탁금 그리고 보전받은 비용보전금을 반환하고 또 반환금은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지금 세무서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 주체하고 징수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비를 재원으로 해서 기지급된 금액의 환수를 위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귀속 주체와 징수 주체를 일치시켜서 체계의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환명령과 세무서 징수 위탁을 포함한 여러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매 선거 시기마다 미반환금이 신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매년 6월 정기 징수를 재위탁하고 또 연 2회 전국 반환 현황을 정비하고 있고 또 소멸시효 만료 6개월 이내에 시효 연장 재판 청구 또 미반환자가 재출마할 경우에는 보전비용 상계 등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 중인데도 실질적 반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처럼 만약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미반환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반환 대상액 징수가 쉽지 않았던 지방선거 관련 보전비용 미반환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38세 금징수과처럼 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담당 부서가 세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미반환금 징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 의견을 2021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사무차장님, 선관위에서는 찬성의견을 냈는데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의견 한번 들어 봤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의견 들어 본 바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거나 미반환 보전금이 제대로 더 잘 환수가 되면 좋겠는데 세무서가 이런 체납세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역량이 더 높을 것인가. 서울시 같이 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적자원과 역량이 있다고 보더라도 시군구에 따라서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김승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선거법 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규정에 있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미보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반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선거법에도 국가선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을 하도록 135조의2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265조의2에서는 모두 국가 세무서에다가 징수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양쪽의 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김승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어쨌거나 반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의견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돈으로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담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인가 저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금 징수 부서에서 선거법에 의한 비용 보전만이 아니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기 위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군구의 장 협의회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관련 내용을 일치시켜 주기를 저희들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조승환 위원** 법률적 정합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시물레이션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벌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것 징수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제발 세금 절차로 해서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연 지자체에 갔을 때 이게 더 견혀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세청에서 걷고 있는 것마저도 더 못 걷을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물레이션을 한번 해 봤는지,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 봤는지, 저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대로 급하게라도 한번 의견 조회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관련 저희 실무 과장님 의견을 여쭙봤더니 지난 3월 18일 날 행안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3월 27일, 금주 말까지 회신이 올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행안부의 실무 과장님하고 국장님 배석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행정안전부선거의회의자치법규과장 이준식**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난번에 비공식 보고받기로는 선관위 사무차장님 말씀처럼 이게 법적 정합성을 맞추는 문제와 함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서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행안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송 위원님.

○**송재봉 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금액을 보면 절반 정도가 안 견힌 것으로 돼 있는데 건수로 보면 사실 국가선거나 지방선거나 거의 비율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장들이 미납액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회의 검토자료는 2025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반환 대상자가 446명, 517억 원인데 미반환된 후보자가 현재 86명, 236억 원이고 그중에 국가선거는 16명, 17억,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70명에 219억으로 9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대부분은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선거가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보전금액 자체가 시·도지사만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의 80%가 교육감선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미반환 금액이 교육감선거는 17명에 189억 정도가 지금 미반환돼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대부분은 교육감이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지자체 숫자랑 생각해 보면 지자체별로 1.5건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지자체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귀속조치하고 업무수행하고 일치되는 거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해서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말씀 중에 주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거면 이런 경우에는 도로 귀속이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지사하고 똑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경우에 도로 귀속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 행정에서 이것을 관할해야 될 텐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적용례와 관련돼서 궁금한 건데 이 법 시행 이전에 미납 반환액에 대한 징수 주체는 그냥 두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옮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만약에 이것을 적용례를 통해서 지자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체납처분 절차와의 충돌, 자료 이관 및 권한 재설정에 따른 행정 혼란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인가 싶어서, 오히려 아예 전부를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난 1월 달에 국세청에 체납 정비하는 준비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도 해당 국세청 팀에다가 기존 미반환된 86건 중에 84건을 다 징수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 것까지 다시 자치단체에서 징수 위탁을 하도록 해 버리면 기존에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징수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원래 1월에 신설돼서 2월에 저희들이 징수 위탁을 다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김은혜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차장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미반환금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징수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하고 오히려 국세청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다, 재산 상황 파악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징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청과 지자체는 각각 어떤 식으로 징수를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각각은 아닌 것 같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저희들이 징수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 같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본다 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를 스크린을 해 보고 무재산으로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세 국세에 관한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그 시점에 한 번만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다시 징수 위탁을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 세입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관허사업 제한 같은 거나 신용불량 등록, 압박 수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자치단체의 행정……

○김은혜 위원 인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국세청이 어쨌든 국세 관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의 재산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에 국세청보다 징수 효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이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선행돼야 그 뒤에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쭙본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이거 하나만……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감선거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시청이나 도청에서 부담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분담을 교육감선거를 단독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9회 지방선거처럼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구분이 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징수할 때도 자기 것을 교육청 분야는 교육청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는 징수과가 없거나 매우 약할 것 같아요. 그런 업무 자체가 없잖아요, 교육청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징수합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도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방자치단체가……

○**김문수 위원** 징수해서 넘겨준다 이렇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게 정확히 정리가 돼 있으면 괜찮고 만약에 그게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는 징수 관련된 분야가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체로 위원님들이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자체라든지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의견들을 들어 봤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임해 주신다면 27일까지 행안부에서 의견 조회를 하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이 법은 처리를 하고, 단 조건이 행안부에서 부정적 의견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이 법은 다시 재고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법은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3항으로 상정이 돼 있는 안건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모두 투표용지의 청인 및 도장날인의 인쇄날인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소위자료 3쪽입니다.

일단 4건 중에 신동욱 의원안은 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최수진 의원과 조정훈 의원안은 이 중에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여기에 조정훈 의원안은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반대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상 투표용지상의 청인은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은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84조 3항에 따라 인쇄날인을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선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현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구조를 볼 때 선거사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청인 날인을 전담하게 하는 것의 비효율성 문제와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장날인에 따른 투표 대기시간 증가로 투표 편의가 저하될 수 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경우에는 업무 부담 과중을 막기 위해서 조정훈 의원안 같이 대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준병 의원안이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규칙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자가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내용들을 참고할 때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과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 또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은 윤준병 의원님 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보고를……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만요. 이건 오늘 상정된 안이 아니지 않아요?

○전문위원 조문상 그런데 이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소위원장 윤건영 예,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윤준병 의원님 안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벌칙규정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행위나 위법한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상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나 특정 기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벌칙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출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를 보면 30초 분량의 TV 광고에 총 220회 출연한 단체장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에 출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등이 6개월까지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특정인의 경우 선거운동의 동기로 한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이런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공무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안과 같은 개정 의견을 지난 1월에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의 사업의 기공식 거행이라든가 휴가기간 기관·시설 방문, 방송 출연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 처벌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도록 윤준병 의원안 같이 갈 경우에는 즉시 시행에 문제가 없지만 이를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소나 인력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최소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먼저 여야 합의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서 2014년부터 공직선거에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전투표율이 올라가고 특정 정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을 통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을 통해서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제작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인쇄날인과 부정선거 의혹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제도의 변경은 실질적 효과와 투표 관리의 안전성 그리고 선거인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 의혹 해소 목적으로 투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조투표지 투입 방지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의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고 투표함 봉쇄·봉인을 철저히 하고 투표함 보관 상황을 공개하고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여로 담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은 사전투표 관리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투표편의 제고라는 선거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 방식을 통해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윤건영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먼저 관련 개정안 중에서 선거법 151조 4항에 있는 투표용지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는 신동욱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 현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청인을 지금 1개만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전투표소가 구·시·군선관위마다 평균 14곳, 최대 30곳까지 설치되는 상황에서 청인을 인쇄날인 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하여 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소 역시 구·시·군선관위마다 평균 56곳, 최대 152곳이 설치되는데 구·시·군선관위 청인 1개를 가지고 어떻게 각 투표소의 투표용지에 청인을 날인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거일 투표용지를 각각 일일이 날인하는 부분 역시도 몇십만 장에서 달하는 것을 청인 하나로 직접 날인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윤준병 의원님 안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지금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자는 신동욱·최수진·조정훈 의원안이 내용이 극과 극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 현장에 선거관리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인쇄날인 해야 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는 선거일투표와 달리 누가 투표하러 오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및 사전투표용지 교부가 한 사전투표소마다 평균 5곳에서 6곳, 최대 1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의 특성상 날인 대기를 위한 투표소 면적이 부족하고 또 동선 혼란으로 인해서 투표소 내부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직접 도장날인 절차가 한 장당 한 2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으면

14초인데, 이것을 추가할 경우에는 선거인 1인당 평균 투표용지 발급시간은 지방선거의 경우 현재 관내 58초, 관외 68초에서 관내 72초, 관외 82초로 증가하고.

또 인쇄 날인할 때 사전투표장비별 시간당 처리 능력이 18%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대기하는 선거인이 크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하루에 3000명 이상 투표하는 혼잡투표소 같은 경우는 선거인마다 최대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추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셋째는 대기선거인 추가로 인해서 사전투표소의 공간 수용 한계를 초과해서 투표소 건물 외부까지 대기열이 발생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 순창군 투표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사례처럼 그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보다도 외부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유권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투표관리관은 날인에만 집중하게 돼서 사건·사고 발생 대응 등 투표사무 총괄이라는 투표관리관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또 날인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개표할 때 이의 제기 빈발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섯째,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소위원장 윤건영** 차장님, 조금 줄여서 간결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발생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 환경하에서 안정적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윤준병 의원님 것처럼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사인을 인쇄날인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제가 이것은 조금 정돈해서 말씀드리면 여야 간의 쟁점이 첨예한 부분 같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쟁점이 첨예하다고 해서 피할 도리는 없는 것 같고 여야 간에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듣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가 나름 선관위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두 분 내외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조승환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두 분, 두 분씩 이야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조승환 위원님 하시고 김승수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두 분 하시고요.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위원님하고 윤준병 위원님이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이해식 위원** 이상식 위원님.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하고 윤준병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승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조승환 위원** 차장님, 저는 투표관리관의 사전투표에서의 날인 문제에 관해서는, 선관

위는 여야에 상관 없이 아주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본투표는 지금 날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조승환 위원 투표관리관 인쇄날인이 아니라 날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투표인명부가 있고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다 도장을 찍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해 가지고……

사실 제가 선관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투표용지에 점 하나만 있더라도 그 용지는 다시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일일이 다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데 이에 대해서 날인, 청인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

법안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동욱 의원이나 청인을 일일이 다 찍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차장님 생각이 조금, 법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인식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이 돼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사실 피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침해가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상으로, 예를 들어 국회의원선거일 같으면 14일 선거기간을 주고 있는데 5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여론에 왜곡이 생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실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관위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예외적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투표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법안은 여기에 상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명부에 대한 것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계속 하드에 있다 이거잖아요.

차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해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승환 위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데 여의도에 와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 내가 여의도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그 기록은 선관위 하드에만 있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하드에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했다, 안 했다가 전산적으로…… 예를 들면 영도구 동삼동에서 여의도동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투표명부를 사후에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지금 낯인을 못 한다라는 이유 자체가 사전투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못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투표 운영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 첫 번째는 사전투표가 예외적인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사전투표를 어느 선거구에서 누가 했느냐라는 사전투표명부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이 명부가 관리돼 있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이 안건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차장님, 대한민국헌법은 24조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참정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나 공무담임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유권자의 의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많이 하셔야 그게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

○이상식 위원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투표제도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도 예외적인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인 장치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사전투표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편의 제고에 아주……

○이상식 위원 국민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인쇄날인, 현장 날인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고 그런데요.

또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잘 발전해 오고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강국으로 올라선 배경에 IT가 있는데요. 그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 없이 잘 관리해 왔는데……

앞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이것을 계속 문제를 연결시켜 가다 보면 이 배후에는 부정선거 패러다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가면 곤란하지요.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상식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김은혜 위원 소위면 법률안만 갖고 얘기하십시오.

○조승환 위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하자는 거지, 무슨 그게……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이상식 위원 왜, 지금 사전투표……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것을 부정선거론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이상식 위원 아니,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문제를 제기……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잠시만요.

○이해식 위원 질의를 다 하고 말씀을……

○이상식 위원 그러면 질의 다 하고 다른 분이 하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질의 끝나고 발언하시지요.

○이상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전투표가 불리하고 본인들은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그러면 본투표만……

○조승환 위원 유불리를……

○이상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사전투표제도만……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잠시만요.

○김은혜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지해 주실 사항이지 위원들 간에 논박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 조용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 끝나고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질의하시는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시는 것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계속 파고들어 가다 보면, 오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어차피 주제로 올린 이상 이런 말씀 한번 드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꺼내 가지고……

괜히 자극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된 민주주의제도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지수도 지금 계속 전 정부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사전투표의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무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실무상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제도는 지금 현행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사무차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특히 투표용지의 날인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만 계속 강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다 날인하지 않습니까?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자기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투표용지가 전국 어디의 투표용지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그때 또 출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번 사전투표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소마다 일일 투표인이 가장 많은 지역 또 적은 지역 거의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도 직접 날인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투표인이 몰렸던 그런 사전투표소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추정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예, 만약에 직접 날인할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시간으로는 전부 확인을 해 본 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아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안 해 보신 거예요.

만약에 특정 사전투표소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 가지고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이고 그리고 만약에 직접 날인했을 경우에는 투표시간 내에 하루에 투표하러 오신 분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전투표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앞서도 정개특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소 자체가 지금 읍면동 단위별로 1개씩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 제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마는 굉장히 동의 면적이 크고 또 도농복합지역도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사전투표하러 동사무소에 왔다 갈 경우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의 사전투표를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표소를 좀 더 늘리는 방안,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더 들겠지요.

또 그리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사전투표 일자하고 본투표 일자가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변화되는 여건 변화를 투표에 반영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날짜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사전투표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사전투표일 자체를 본투표 일자하고 같이 붙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동일 투표소 가지고 다 투표소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훨씬 더 사전투표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투표소가 늘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이렇게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가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직접 투표관리관이 서명날인 해야 된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지금 사무차장이 말씀하시는 게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시점, 현재의 사전투표관리제도하에 또 현재의 선거관리 환경하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차가 한 대씩 이렇게 쪽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전투표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권자들이 동시에 발급기, 관내는 관내에 발급기 여러 대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동시에 서너 군데 가고 관외도 서너 군데 동시에 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날인이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직접 날인을 하려면 유권자가 한 줄로 쪽 들어와야 됩니다, 선거일 투표소처럼. 한 줄로 쪽 들어오면 관리관이 가운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관내 유권자·관외 유권자 발급이 되면 도장을 찍어서 나눠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투표소 3500, 이번 지방선거 때 3571개인데 거기보다 2.7배 정도가 추가돼야 됩니다. 전국에 한 9500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면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1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1대씩만 두고서 유권자들이 한 줄로 쭉르륵 들어오는 형태로 한다면 직접 날인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선관위의 요구에 대해서 따르도록, 그리고 소요되는 사무원 숫자도 마찬가지로 관계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련 장비 개발 비용이라든지 선거 전용 통신망 설치 비용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간으로도 1년 정도가 필요하고 금액으로도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저희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 조승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공직선거법상의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조항 때문에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다는지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선관위에서 보기에 사전투표 명부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저도 조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재 2일간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사전투표 다음 날 출

력되는 본투표의 선거인명부에다가 기록이 됩니다. 몇 월 며칠, 작년 같은 경우 '5월 29일 어느 동 사전투표자' 이런 형태로 사전투표자로 기록이 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가능한 겁니다.

○**윤준병 위원** 가능하고 또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관위에서 보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국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을, 직접 날인 내용을 어렵지만 실천하려고 해도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준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불가능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후에 해도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날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위임 근거에 의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었습시다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지금 차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배준영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소위원장 윤건영**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계속 토론이 되니까요.

○**김은혜 위원** 아니,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배준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정도로……

○**배준영 위원**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만하시지요. 서로 또 하면 실제로 논의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 안건 가지고 또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그런데 토론이 이어진 게 아니라 공격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의 반론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토론할 때 또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지를 하시거나 경고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좋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사실 법안소위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지 여기 정치적인 공세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니 야당이 입법 방해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유감을 표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소위의 취지에 충실하자라는 말씀 정도로 저는 수용하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띠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의원 조정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으로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자료 안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안건 3개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첫 번째가 조정범위 20%를 이번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현행법으로는 비례대표를 1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지역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지역을 확대할지 또는 유지할지 아니면 없앨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낼 건 아니라고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야 간사 협의나 투 플러스 투 회의에서 진도가 나갈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의견이나 선관위 의견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큰 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춘생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정춘생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 안건 논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의안 중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벌칙 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안건은 얘기하시고 논의를 안 하셔서……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같이 미뤘습니다, 어차피 연계돼 있는 거라.

○**윤준병 위원** 사실은 그것 연계가 안 돼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은 맞는데 내용은 좀 다른 거였는데 그 내용을……

○**소위원장 윤건영** 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 가지고요.

○**윤준병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윤건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그 전예요. 그러면 의견을 드리면 이게 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여야 간사 협의를……

○**정춘생 위원** 일단 질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야 간사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앞서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투 플러스 투 회의를 해서 계속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도리밖에는 없고 오늘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벅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혁신당 몫으로 왔습시다만 진보당하고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의견들을 같이 제가 목소리를 낸다고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투 플러스 투 회의에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일정을, 제가 며칠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4월 20일까지 민주당은 모든 공천을 확정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행대로 하겠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확정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개편 없이 현행대로 20일까지 공천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정말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개특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중대선거구제 부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시범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논의하는 것은……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정춘생 위원** 그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최대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야 현행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10%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못 가고 있고 양당이 지금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당 구조 독점이 전혀 개선될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양당 구조 독점이 매 선거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95%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연동제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이야 구체성을 떨 수 없겠지만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행 10%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리고 조정범위가 20%인데 이 20%를 어떻게 하자는 의견들을 여기 회의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정수 조정범위 20% 확대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 10%를 확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확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도 과거보다는 중대선거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내용도 감안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시범실시되었던 지역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되 현실성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임미애 위원님, 희망하셨으니까요.

○임미애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30% 정도 확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0% 상향을 했을 때 여전히 헌법불합치 지역이 존재합니다. 전체 아홉 지역 중에서 30% 확대했을 때 헌법불합치가 해소되는 지역이 부산의 중구, 전라북도 무주군·장수군이 세 군데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했던 도서지역에 대한 것, 웅진군하고

경북의 울릉군의 경우는 섬 지역의 특성상 주민대표를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제가 그렇다고 해서 논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초의회와 관련해서요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축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50%가 훌쩍 넘는 상황인데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공직선거법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출 정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의원의 조정범위가 지자체별로 보면 지금 20% 안에서도 범위가 남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정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의회의원 조정을 통해서 지금 헌법 불합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그거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의 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광역의원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범위를 유지해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확대 부분에 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순히 10%다, 15%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비례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봐서 이거는 10%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모를까 이것도 역시 무조건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양당이 다 독점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주장하는 건 아닌데 정말 논란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단순히 여기서 확대한다, 축소한다 이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시범지역을 실시했으니까 시범지역의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그 범위 안에서, 개수 안에서 옮겨 보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더 키운다 이것도 역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렇게 순서 가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저는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의원 조정범위 관련해서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취지가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정범위 20% 이내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조정범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총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헌법불합치 그 취지도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불비례 이런 걸 해소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증가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증가 요인은 결국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증가 요인이 있는 건데 조정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유지하는 게 옳다. 이걸 30% 정도로 올리게 되면 여론의 비판도 상당히, 굉장히 크게 있을 거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게 조정범위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확대 여부는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10% 정도 필요하다. 비례대표를 의원 총수의 10%로 묶어 놓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의 구성 자체가 너무나 단순화돼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0% 정도는 늘려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인 선거구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인 선거구는 무투표당선 비율 이런 것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개특위를 하는 이유는 결국 좀 더 진전되고 개혁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시범지역을 가능한 한 좀 넓혀 가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여야 간 협상을 해 보되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가야지 이걸 좀 더 축소하거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방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 20%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님과 조승환 위원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10%는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 20%로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정치색은 약화되고 생활정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 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양대 정당이 그걸 다 담아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하야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비례 10%를 20% 정도로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저희 옆 지역구 용인정 지역에 그게 됐다가 지금 전국에 열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시범 지역은 열한 군데였습니다.

○이상식 위원 열한 군데입니까? 저도 이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 지역구의 의원들이 물론 다 100%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게 동의가 돼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동의나 의중이나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곳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지금 20% 정수 가지고 두 위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행정구역·지세·교통 또 그 밖에 조건을 고려해서 100분의 20으로 돼 있지만 지금 전북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먼저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는 표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충북하고 전북만. 그 이유가 행정구역, 지자체 수로 나누는 그런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정수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 조정해서 100분의 30을 하는 것이 의원 정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은 전북이나 충북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먼저번에 제가 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 선거구가 군의원 선거구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부칙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부칙에 넣어서 확정하는 걸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도 지금 보면 짝수로 돼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차장님,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박덕흠 위원 짝수로 돼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홀수로 조정을 해서 어쨌든 비례대표를 좀 늘리더라도, 한 명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만은 조정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심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정개특위 법안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지방의 실정과 관계없이 중앙의 시각에서 또 중앙 정치권의 이해득실·이해관계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역의원 조정범위와 관련해서 광역의원뿐만 아니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까지는 곱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20% 조정범위 내에도 이걸 채운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지역의, 그러니까 지금 광역의원 정수가 부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 확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3~5인 선거구제, 이 정도로 가면 거의 광역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비례대표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그런 지역에서 늘 생활하는 또 아는 사람이 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과 지역주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대선거구제 저번에 시범 실시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해당 시범 실시했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그쪽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지 우리가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인 선거구제를 없애자는 소수 정당들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조차도 3인 선거구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있고 3인 선거구로 바꾸기에는 동을 분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3~5인 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향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그렇게 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2인 선거구가 나쁜 것처럼 2인 선거구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5인 선거구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그래도 여러 소수 정당의 대표성도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거구의 몇 % 이하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5인 선거구로 유도하는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2인 선거구는 다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또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조정범위를 20%로 하면 남는 시도가 많은 반면에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딱딱 채워도 시의원이 다른 시도를 대표하는 유권자 수보다 한 30%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인천시민들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박덕흠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일부 좀 조정해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또 첨언해서, 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접경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은 꼭 필요하다 이런 법을 냈고 임미애 위원님이 찬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송 위원님.

○**송재봉 위원** 정수 조정 문제는 필요한 지역도 있고 안 한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좀 높여서 30%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지역에 따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보완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비례대표를 한 명만 뽑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저도 한 20%까지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그럴 경우에 기초의 경우에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지역은 정수를 같이 늘리는 쪽으로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지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곳에 더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더해서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행정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 주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표로라도 만들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일준 간사님한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정리를 할까요?

○**이해식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날인 관련된 답변 있잖아요. 답변 준비하신 것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추가로 말씀……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위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규 의원도 발의했고 저도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의원 일몰이 됐는데 그 부분을 비례대표로 확대하는 부분……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건으로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했고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소위 안건으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춘생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추가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논의 안건으로 무엇을 올릴까 부분은 매일매일 사전에 논의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교육의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공천 방지 관련해서 제가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께서 법안 상정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하고요. 안건 상정된 부분 중에서 당일 당일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범위를 정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방금 정춘생 위원님 말씀 주셨던 돈 공천 관련된 부분도 다음 여야 간사 협의 때 논의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도장날인 관련해서 사무차장님 하신 말씀이 계속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법적인 쟁점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러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근거 자료로 해 갖고 그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예산은 저희가 마련하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과 배준영 위원님 말씀이 결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의견 제출해 주시면서 만약에 방금 배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도 같이 담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도 동일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게 수백만 명에게 일일이 도장을 찍으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그러면 이게 현재 현황상 시간이 각 투표소마다 얼마나 길어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만약에 인쇄가 아니라 도장날인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인원 그리고 필요한 투표소 수 그리고 필요한 시간이 어떤 건지를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아까 차장님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특위에 있는 저희 국민의힘 위원이 단 한 번도 부정선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부정선거라는 말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음에 회의 발언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쨌든 국민들이 효율과 동일하게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신뢰를 요구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선관위의 존재 이유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선거보전금 환수 체납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 체납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선거별 또 사유별 그 통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안부 의견은 당연히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했던 조정범위 부분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 부분,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이견의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 분들의 내용상에서도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오늘 논의로만 그치지 말고 또 다시 우리 정개특위에서 좀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의견을 좁혀 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투 플러스 투 회의와 함께 정개특위에서는 어떤 방식이 나올지 의견 있으시면 여야 간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정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논의를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선거1국장 이상능